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12호

## FY2024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 리더 메세지

김한석 센터장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12호는

‘회계부정·오류에 대한 임원의 책임과 역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험무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쟁점’,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첫 단추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의 전문가 기고를 담았습니다.

또한, ‘FY2024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국내 감사위원회 안건 검토’와 주목할 최신 규제 동향을  
수록했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회계부정·오류에 대한 임원의 책임과 역할

## ▨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과정에서 임원의 책임과 역할

### 재무제표 작성

(외감법 제6조)

대표이사·회계담당 임원은 재무제표 작성 의무 부담,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발생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외감법 제8조)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총괄 및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책임 보유, 운영실태 보고·평가 의무 미이행 시  
제재·손해배상 위험 존재

### 사업보고서 서명·확인 책임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7항)

대표이사·공시담당 임원은 사업보고서 정확성에 대한 최종  
책임 보유, 거짓·부실 공시 시 형사처벌·손해배상 책임 부담

### 외부감사인 선임·품질관리 책임

(외감법 제10조 제4항~제6항)

감사(위원회)는 적격성·독립성을 갖춘 외부감사인 선임·평가  
의무 부담, 절차 위반 시 감사인 직권지정 등 제재 부과

### 회계부정에 대한 감사기구의 권한과 책임 강화

- 외부감사인 통보 → 감사위원회 조사 → 증선위 보고 절차 의무화
- 평상시 회계부정 대응체계 구축, 외부전문가 적정 활용, 증선위  
보고·감독당국과의 충실한 소통,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필요

### 회계부정·오류에 대한 임원의 책임

- 회계부정 발생 시 행정제재·민형사상 책임 부담
-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과징금·검찰고발 등 제재 강화
- 허위 재무제표 작성 시 중대 형사처벌 가능(최대 무기징역)

“ 이사회는 재무보고 신뢰성 확보에 대한 최고 관리·감독 책임을 지며,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경우 회계부정 예방과 위기 시 시장 신뢰 유지 가능 ”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쟁점

## - 상법 개정 이후의 과제와 전망

### 주주이익 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

#### 상법 제382조의3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포함

-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
- 총주주의 이익을 보고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함

### ※ 개정이후의 쟁점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실효성

#### (1) 형사책임 - 업무상배임죄 적용의 한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장되었더라도, 형사법적 관점에서 이사와 주주 간에는 여전히 위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형법적 개입은 자제하고 민사적 구제수단 실효성 강화 방향 고려

#### (2) 민사책임 - 상법 제401조\* 손해배상청구의 확대 가능성

이사의 의무대상에 주주를 명시함으로써, 주주가 제401조를 근거로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 마련, 주주의 '개별손해'가 '직접손해'로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이사의 제3자(주주 포함)에 대한 책임을 규정

### ※ 직접손해의 인정 범위와 과제

직접손해 범위 확대는 주주권 강화에 긍정적이나 남소(濫訴)·경영위축 부작용 고려로 입법·판례 균형 및 다음의 제도 보완 필요

- ▣ 직접손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입법기준 제시
- ▣ 남소 방지를 위한 절차적 요건 합리화
- ▣ 이사의 방어권 보장



“ 금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이자 기업지배구조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적 실험으로 성패는 법원의 조항 해석 및 실무자의 운용에 달려있음 ”

#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첫 단추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지배구조 개선은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해 기업 신뢰와 지속가능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전략

## 전기 대비 당기 핵심지표 준수율 차이가 큰 상위 5개 원칙

구분	2025년					2024년	개선율 (C - C')
	전체	자산 2조원 이상(A)	자산 1조원 이상(B)	자산 5천억 이상(C)	Diff (A - C)	자산 5천억 이상(C')	
원칙 ①	38.6%	48.9%	31.8%	28.5%	20.4%	14.5%	14.0%p
원칙 ③	71.9%	80.0%	69.8%	60.4%	19.6%	51.7%	8.7%p
원칙 ④	42.2%	56.4%	38.8%	22.9%	33.5%	9.0%	13.9%p
원칙 ⑩	59.2%	75.6%	50.4%	41.0%	34.6%	35.2%	5.8%p
원칙 ⑯	63.9%	84.0%	59.7%	35.4%	48.6%	23.4%	12.0%p
전체	54.6%	66.9%	49.3%	44.7%	22.2%	35.8%	8.9%p
대상 회사 수	498	225	129	144	-	145	

- ▶ 상장사 준수율은 자산 2조원 이상(A 집단) 66.9%, 5천억원 이상(C 집단) 44.7%로 약 22.2%p 차이가 나며, 자산규모가 클수록 지배구조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향이 있음
-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C 집단)의 2024년 준수율 35.8% 대비 2025년 C집단 준수율은 8.9%p 개선됨

## 주요 핵심지표 개선방안

### 원칙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 연간일정 및 이사회 시점을 앞당겨 주총 안건·자료 사전확정 시 주주 검토시간 확보 및 참여도 제고

### 원칙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 결산·감사·이사회 일정을 조정해 비집중일에 주총 개최 시 주주참여 및 의결권 행사율 향상

### 원칙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 정관을 정비해 배당기준일을 유연하게 설정 시 배당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 신뢰 강화

### 원칙 ⑩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 임원후보 기준·평판조회 절차 정비 시 기업가치 훼손 위험 완화 및 책임 있는 임원 선임체계 강화

### 원칙 ⑯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으로 정기 소통하는 체계 마련 시 감사 투명성 및 내부통제 신뢰성 제고

1)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4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498개사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사이트 참고 (<https://kind.krx.co.kr/corpgeneral/companyGovernance.do?method=loadInitPage>)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FY2024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및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현황<sup>1)</sup>

### KOSPI 200 중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했다고 공시한 186사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8.1% (15)

모두 보유  
41.4% (77)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24.7% (46)

미공시·해당없음  
25.8% (48)

- ✓ KOSPI200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86사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보유한 기업**은 77사(41.4%)
- ✓ 전기(63사) 대비 4.8%p 증가 → **감사(위원회) 중심 지휘체계로 점진적 확대** 중이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비중이 여전히 과반 이하로 **개선 여지가 큼**

## 독립적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에 대한 회사 자체평가 대비 실질적 독립성 현황<sup>2)</sup>

### KOSPI 200 중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sup>3)</sup>에서 **독립적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했다고 공시한 98사**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5.1% (5)

모두 보유  
52.0% (51)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32.7% (32)

미공시·  
해당없음  
10.2% (10)

- ✓ 기업 스스로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했다고 공시한<sup>4)</sup> 98사 중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한 기업**은 51사(52.0%) → 전기(43사, 50.6%) 대비 **일부 개선(1.4%p▲)**
- ✓ 하지만 상당수가 **실질적 독립성(감사위원회 직속 보고체계, 인사권)**을 갖추지 못함

“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체계와 인사 독립성 등이 강화된다면, 내부감사는 기업 리스크 대응력 및 지속가능성장을 이끄는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 ”

1, 2) FY202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동 보고서 부속서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조사

3, 4) FY202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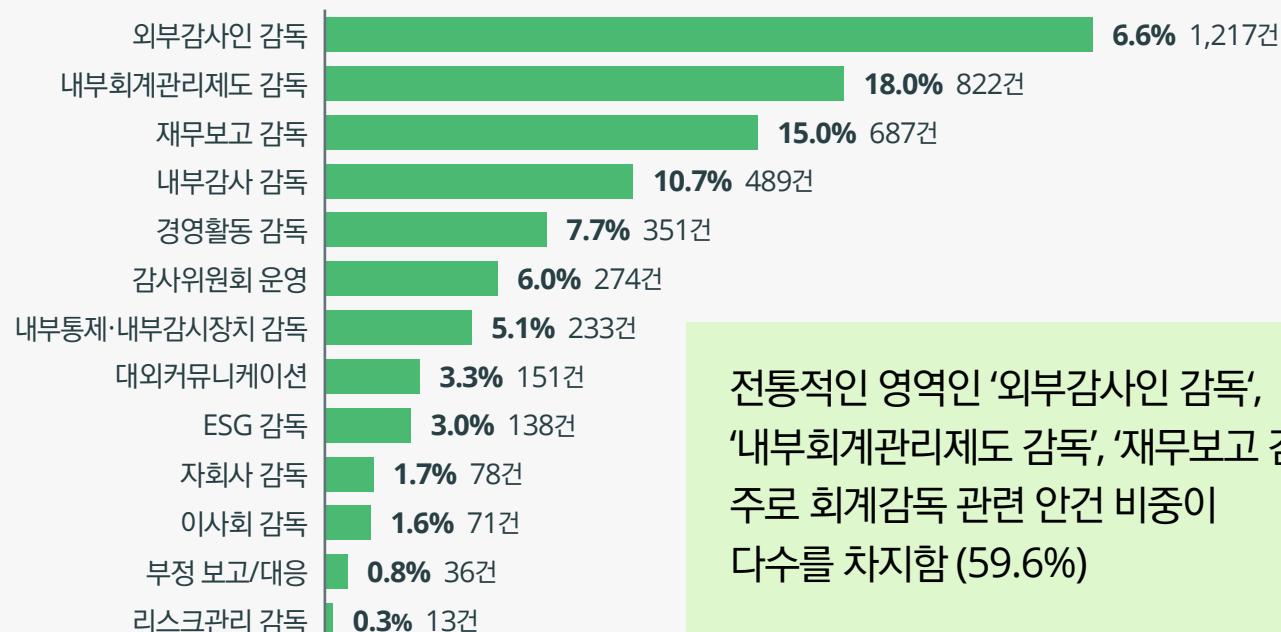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감사위원회 안건 검토

## 배경

감사위원회 안건 검토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역할을 구분해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며 글로벌 감사위원회 주요 안건 영역과 비교함

## FY2024 KOSPI200 기업 감사위원회 안건 분류 (총 4,570건)



전통적인 영역인 '외부감사인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재무보고 감독' 등  
주로 회계감독 관련 안건 비중이  
다수를 차지함 (59.6%)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상 KOSPI200 FY2023 사업보고서 공시내용(IV.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함. FY2024 기준  
KOSPI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총 안건수는 4,570 건으로 집계됨

## 글로벌 감사위원회가 중시하는 안건 영역 (2025 글로벌 감사위원회 설문 결과)



사이버보안, 전사리스크 관리,  
재무·내부감사 및 인재관리,  
법률·규정 준수와 재무혁신 등  
다양한 업무감사 주제를 담고  
있으며 국내 현황과 차이를 보여줌

▣ Deloitte Global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제4판, 2025

안건 설정 시 **감사위원장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며,  
**최고경영진 및 내부감사부서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됨

#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Q.** 기업공시제도 개편으로 주주총회 결과 및 임원보수 공시가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강화되는 공시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내외 투자자의 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시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주주총회 관련 정보 투명성 강화 요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시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은 경영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 ('26.3.1. 시행)

-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총 당일 공시
  -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등)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총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 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를 공시
- \*'26.3.1일 이후 시행된 주주총회부터 적용 추진

## 주주총회 분산개최 유도

-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주총 분산 관련 가점 확대,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사유에 주총 분산 노력 반영 예정 **'26.3.1. 시행**
- 의결권 기준일을 별도의 날짜로 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기업, 주총 분산 개최 노력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반영한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25년 말 개정**

## 임원보수 공시 강화 ('26.5.1. 시행)

-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화산액은 병기
- 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전문가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정현 파트너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 박종성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김학범 파트너

Audit & Assurance

@ hbkim@deloitte.com



## 임정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정훈 파트너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 유민지 파트너

Audit & Assurance

@ minjyoo@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Deloitte.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Partner  
hansukim@deloitte.com

강환우 Director  
hwankang@deloitte.com

이주연 Manager  
juyeonlee@deloitte.com

이화연 Senior Consultant  
hwayelee@deloitte.com

권예은 Senior  
yeekwon@deloitte.com

Contact us  
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